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25호

**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 
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 고시**

「지방자치법」 제16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업무 위탁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4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**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 
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**

제1조(목적) 본 규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하안주공10·11단지 및 하안주공 12단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의 소관 사무 일부를 광명시장에게 위탁하여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하안주공10·11단지 특별계획구역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광명시 고시 제2024-82호)에 따라 고시된 구역
2. 하안주공12단지 특별계획구역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광명시 고시 제2024-82호)에 따라 고시된 구역
3.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「도시정비법」이라 한다)을 따름

제3조(구성) 본 규약은 서울특별시장·금천구청장·광명시장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고,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다.

1.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: 서울특별시장, 금천구청장
2.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장 : 광명시장

제4조(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) ① 「도시정비법」 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광명시로 지정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필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권자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서 광명시장으로 위탁한다.

③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광명시장이 진행한다.

④ 「도시정비법」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는 광명시장으로 지정한다.

⑤ 분양신고·철거신고, 철거·착공, 착공신고·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고시에 대해서는 서울특

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필지에 대한 금천구청장 권한을 광명시장으로 위탁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 및 광명시장과 협의 후 처리한다.

제5조(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) ① 「도시정비법」 제101조의8 따라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, 광명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송부한다.

② 「도시정비법」 제101조의9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, 광명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송부한다.

③ 「도시정비법」 제101조의10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사업계획(변경)인가를 신청하면 광명시장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관리방안, 취득세·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및 부담금·부담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과 협의하고, 정비사업계획(변경)인가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송부한다.

④ 「도시정비법」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, 관리처분계획의(변경) 인가를 신청한 경우, 광명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(변경) 인가 결과를 금천구청장에게 송부한다.

⑤ 「도시정비법」에 따른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광명시장이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송부한다.

⑥ 철거신고 및 철거·착공 및 착공신고·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고시 후 광명시장이 그 결과를 금천구청장에게 송부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 및 광명시장과 협의 후 처리한다.

제6조(추진실적의 보고 등) ① 「도시정비법」 제111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62조제1항에 따라 금천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5조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광명시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결과를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
② 제5조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에게 송부한다.

제7조(경비의 부담) 본 규약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 등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광명시장이 부담한다.

제8조(규약개정) 본 규약의 개정 및 권리 조정 등에 대해서 필요시 협의하고, 서울특별시장, 금천구청장, 광명시장 모두 동의하여 시행한다.

제9조(준용규정)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도시정비법」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약은 서울특별시시장, 금천구청장, 광명시장의 고시한 날 중 가장 늦은 일로부터 시행한다.